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5. 3. 26.(수) 10:00 배포 2025. 3. 26.(수) 08:00

재생에너지 분야 제도개선으로 탄소중립 가속화

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, 다목적 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 등 8개 과제 발굴 …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대

□ **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**(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, 한화진 공동위원장, 이하 "탄녹위")는 온실가스 감축*과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**「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(안)」을 제1차 탄녹위 에너지·공정전환 분과위원회(3.25)에서 논의**하였다.

*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,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: 파리협정에 따른 자발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'30년까지 '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% 감축 추진

○ 이는 **「제1차 국가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」**('23.4)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('30년 21.6%+α)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**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**한 것이다.

□ **①수상태양광, ②주차장태양광, ③영농형태양광, ④이격거리 규제, ⑤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의 개선방안**을 도출하기 위해 그간 **환경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산림청, 지방자치단체**(보령시, 충주시) 등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.

① **(수상태양광) 다목적 댐,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**을 **대폭 확대**하고, **사업 여건**을 **개선**하여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.

- **발전사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에도 내수면 점용을 허용**할 계획으로,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리스크 저감이 기대된다.

- **다목적 댐 수상태양광** 설치계획을 내수면의 **기존 5%에서 10% 이상으로 대폭 확대**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수상태양광 **최대 잠재량을 2배 이상 확대**(최대 3.2GW)하고 **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을 개선**한다.

- **보전관리지역 수상태양광** 설치가 불가한 일부 지자체의 **조례 개정**(보령호-보령시) 또는 **설치계획 수립을 권고**(충주호-충주시)하여 **추가 입지**를 **확보**한다.

-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**저수지·담수호**(3,371개소) 등의 **수상태양광 사업자**

선정기준을 **합리적으로 보완**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.

② **(주차장태양광)** 도로공사, 지자체 소관 **공영주차장 2,995개소 대상 태양광을 의무화**하고, 주차장태양광 촉진을 위한 **인센티브 제도**를 신규 추진한다.

③ **(영농형태양광)** 농지 타용도 **일시사용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**하고, **인센티브 및 전문성 강화**를 지원하여 농지 면적을 유지하면서 농민들의 **영농형태양광 참여 확산을 유도**한다.

④ **(이격거리)** 태양광 **이격 거리를 완화**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**인센티브**(선정평가 가점 등)를 부여하여 **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유도**한다.

⑤ **(육상풍력)** **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용기준을 보완**하여 사업 절차의 투명성 및 **육상풍력 입지 잠재량을 추가 확보**한다.

< 「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(안)」 요약 >

분야	개선과제	소관부처
수상 태양광	❶ 다목적댐 내수면의 외부기관 점용 허용	환경부
	❷ 다목적댐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상향	환경부
	❸ 보전관리지역 내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	보령시, 충주시
	❹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	농식품부
주차장 태양광	❺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	산업부
영농형 태양광	❻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	농식품부, (산업부)
이격거리	❼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발굴·추진	산업부, 환경부
육상풍력	❽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 절차 보완	산림청

□ 이번 탄녹위 에너지·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주재한 **한화진 탄녹위 공동위원장**은 "제도 개선을 통해 **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기대**할 수 있을 것"이라고 언급하고, 아울러 "**과제별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 수행**할 것"을 당부하였다.

□ 이번에 논의된 **「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(안)」**은 오는 4월 중 개최 예정인 **「제4차 탄녹위 전체회의」에서 최종 확정**될 예정이며, 이후 탄녹위를 통해 이행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붙임 : 「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(안)」 주요 내용

담당 기관 <총괄>	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에너지전환국 에너지전략과	책임자	과 장	이동섭	(044-200-1932)
		담당자	전문위원	안건우	(044-200-1935)
	환경부 수자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이상훈	(044-201-7682)
		담당자	사무관	박영상	(044-201-7683)
	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은정	(044-201-7270)
		담당자	사무관	정하니	(044-201-7274)
	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해청	(044-201-2631)
		담당자	주무관	이혜련	(044-201-2641)
	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성우	(044-203-5360)
		담당자	사무관	고승우	(044-203-5371)
	산림청 국유림경영과	책임자	과 장	박승규	(042-481-409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보라	(042-481-409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「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과제(안)」 주요 내용

◇ **2030 NDC 및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잠재량**을 확대하기 위한 **5개 분야 8개 규제·애로사항**에 대한 **제도개선 계획 마련**

1 수상태양광

❶ 다목적댐 내수면의 외부기관 점용 허용 (환경부)

○ **(현황)**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수자원공사 또는 특수목적법인(SPC)의 대주주가 수자원공사인 경우로만 한정

○ **(개선계획)** 발전사 등 외부기관도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댐 내수면 점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운영기준 마련(~'25.下)

○ **(기대효과)** 공기업 등의 공동·추가 투자를 유도하여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확대 가능

❷ 다목적댐 內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 상향 (환경부)

○ **(현황)**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 시 댐 내수면의 5% 이내로만 점유하도록 관리 중 → 수상태양광 설치계획 수립에 애로

○ **(개선계획)** 현재 댐 내 수상태양광 설치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계획 확대 수립을 유도하고, 향후 연구용역(~'26.3월)을 기반하여 설치 가능 면적을 10% 이상으로 상향토록 가이드라인 수립·검토

○ **(기대효과)** 다목적댐 수상태양광 잠재량 증가 및 설비 대형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도모

❸ 보전관리지역 內 수상태양광 설치 허용 (보령시, 충주시)

○ **(현황)** 일부 지자체(보령시, 충주시)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다목적댐 수면에 조례상 수상태양광 설치 불가

○ **(개선계획)** 보령시(보령호)는 의견수렴 후 금년 하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여 수상태양광 설치를 허용하고, 충주시*(충주호)는 향후 설치계획 수립 검토

* 충주호 일원은 충북 북부권 관광거점지역 개발추진 중으로 계획적인 수상태양광 입지 필요

○ **(기대효과)** 수상태양광 잠재력 확보 및 설치 확대 기대 (충주시는 수상태양광 입지 확보 및 권고 이행을 지속 관리할 계획)

❹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기준 개선 (농식품부)

○ **(현황)**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시 사업 지분 20%를 '상생기여분'으로 농어촌공사에 저가 양도하도록 유도

* 사업자 평가항목 중 '상생기여분 양도금액'에 7점(100점 만점)을 배정, 저가 양도 유인

○ **(개선계획)** 수상태양광 사업자 공모 시 태양광 설비가격 등을 고려한 '상생기여분 양도금액' 하한가를 설정하여 합리적 지분참여 유도

○ **(기대효과)** 저수지·담수호 등 수상태양광 설치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

2 주차장태양광

❺ 공영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(산업부)

○ **(현황)**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, 야외 공영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치 필요성이 높으나, 설치유인 미흡

○ **(개선계획)** 도로공사, 지자체 소관 야외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설치 의무화 (「신재생에너지법」 개정, '25.下) 및 인센티브(융자, 보조금 지원 등) 도입('26년~)

○ **(기대효과)** 주차대수 80대 이상 공영주차장(2,995개소) 태양광 보급 활성화

3 영농형태양광

❻ 영농형태양광 제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(농식품부, 산업부 협조)

○ **(현황)** 영농형태양광 농지 일시사용 허용 기간이 최대 8년으로 사업성 (20년 이상의 사업기간 확보 필요) 제고 어려움이 있고,

- 농민(자경농)의 자금 및 발전 사업 전문성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우려

○ **(개선계획)**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연장하고,

- 영농형태양광시설 정책자금 지원, 발전 전문기관 연계방안, 영농형태양광 집단화 등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 계획

○ **(기대효과)** 농지면적을 유지하면서 영농형태양광 농민 참여 확산 가능

4 이격거리 규제

❼ 이격거리 규제개선 인센티브 발굴·추진 (산업부, 환경부)

○ **(현황)**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 부지확보에 애로

○ **(개선계획)** 지자체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이격거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규제개선을 유도

- (산업부)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선정기준 내 이격거리 완화 가점 내용을 보완('25.2월)하고, 개선상황 등을 고려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 추진
- (환경부)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등의 선정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별 이격거리 규제완화 가점을 신설('25.11월)할 예정

○ **(기대효과)** 인센티브 기반의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완화를 유도하여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면적 확대

5 육상풍력

❽ 경제림육성단지 內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절차 보완 (산림청)

○ **(현황)** 경제림육성단지 내 풍황계측기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풍력발전기 등 설치는 가능함에도 풍황계측기 설치에는 애로* 존재

* 「국유림법 시행령」上 대부등의 기준에서 풍력발전기, 전기실, 연결도로 등에 한정하여 허가하나, 풍황계측기는 미포함되어 일부 관할 국유림관리소장 재량에 따르고 있음

○ **(개선계획)** 관계부처·업계 의견수렴 후 「국유림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신청 절차, 허가기준 등 보완방안 마련(~'25.9月)

○ **(기대효과)** 경제림육성단지 등 국유림 내 풍력발전 유망지역을 발굴하고, 개발 잠재량을 추가 확보 가능

◇ **상기 과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, 추가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탄녹위에서 논의 예정**